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98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 의 자 : 김예지 · 유용원 · 김선교
서미화 · 강득구 · 정성국
고동진 · 서영석 · 용혜인
배현진 · 백종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20%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데, 이들 중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함.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02만 원에 달해,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하면 의료접근성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임. 아울러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시작하면 급여가 감액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단기간 내 안정적·장기적인 탈수급

이 가능한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수급에서 벗어났더라도 다시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사례도 많음.

이에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의료급여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산 축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18조의8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증가하여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때부터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본다.

제18조의8제1항 단서 중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2조의4(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증가하여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때부터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본다.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 ----- ----- ----- ----- -----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